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6호

- 2026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개방형직위 -

전략홍보팀장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개방형직위(전략홍보팀장)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1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주요업무

임용직위	직급	인원	기간	주요 업무
전략홍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5호)	1명	2년	· 방송 홍보 기획 및 취재 대응 · 시정홍보 콘텐츠(홍보영상, 유인물, 홍보책자 등) 기획·개발 ·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 시정 주요 메시지 기획, 연설문·말씀자료·축사 작성 · 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한 영상광고 추진 · 주요 행사 영상촬영 관리 · 지역언론발전지원사업 추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개방형직위)

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2호)

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 임용신분

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공모과정을 거쳐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당해 직위 보임이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나. 민간인의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당해 직위에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주소지·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 4.>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2022. 1. 4.>

바. 삭제<2022. 1. 4.>

사.「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자격요건

- 다음의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자격요건(경력기준일: 면접시험일)</th></tr>
<tr><td rowspan="4">경력요건</td><td rowspan="2">(관련학과) 학력기준</td><td>【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td></tr>
<tr><td>【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td></tr>
<tr><td>자격증 기준</td><td>○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2 ‧ 변호사</td></tr>
<tr><td>공무원경력기준</td><td>○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td></tr>
<tr><td colspan="2">민간경력 기준</td><td>○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함</td></tr>
<tr><td colspan="2">관련학과</td><td>○ 언론학과, 언론홍보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국문학과, 문예창작학과 등 언론·홍보 관련 학과</td></tr>
<tr><td colspan="2">관련분야</td><t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 등에서 언론 · 홍보 · 광고 등 관련 근무·연구 경력</td></tr>
</table>

※ 경력요건의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전임근무(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예시: 주 20시간 근무), 전임근무시간(주 40시간/1일 8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5. 보수수준

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다.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

연봉 등급	적용 대상	상한액 (천원)	하한액 (천원)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3,801	53,316

6.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여부, 증빙서류 유효여부, 임용자격 요건 등 형식요건 심사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적격성 심사(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및 능력요건 검증

※ 능력요건: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7.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2 4.(금) 전후 예정	2026. 12. 11.(금) 전후 예정	2026. 12월 중

※ 합격자 발표는 세종시청 누리집「시험정보」란에 게시되며, 면접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개별 통지 예정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26. 11. 16. ~ 11. 20.(5일간)

다.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팀(5층 511호)

라.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팀

· <u>접수마감일(2026. 11. 20.) 소인분까지 인정</u>

· 해당 수입증지(수입인지 아님) 수수료 비용만큼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 구입 동봉

※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16:30) 유의

· 우편봉투 겉면에 "2026년 제3회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응시원서" 문구 표기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사실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44-300-3045)로 고지하여야 함

· 등기우편 접수자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문자메시지)로 통보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u>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중식시간 제외</u>

· 응시원서 제출 전 시청 민원실에서 수입증지 수수료(10,000원)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인증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마.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응시 수수료 면제대상은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첨부

9.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나.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첨부(개방형 5호: 10,000원)
 - ·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 · 등기우편 접수: 해당 수수료는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우체국 판매)**
 ※ 정부수입인지 동봉 금지

다.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마.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의 주요 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계획(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기술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아.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학위)증명서 모두 제출

※ 해외학위 등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첨부(최종합격 시에는 아포스티유(www.apostille.go.kr/), 해당 대사관 또는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 직급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

※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전임근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기준) 이외의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추가서류 제출관련 문의: 운영지원과 ☎ 044-300-3045)

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kcomwel.or.kr)에서 출력 가능

※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 제출

카.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별지 제9호 서식) 1부(중복표시 가능)

타.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자격증 등 해당자에 한함)

※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별지 제10호 서식)

※ 모든 증명서류(최근 3년 이내 경력)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을 제출하여야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셔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바. **담당업무가 기재된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와 직위·직급 등을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과 확인자 서명(날인 포함)이 명확해야 합니다.

아.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모집공고 결과 응시자가 없는 경우,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이상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 응시자가 1인일 경우, 7일 이상 연장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시험절차 등	운영지원과	044-300-3045	
임용분야 직무내용	대변인	044-300-2612	

붙임 1. 직무수행요건 명세서 각 1부.

2. 응시원서 등 별지서식(제1~10호) 각 1부